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「공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 사항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(“22.12.”)으로 [별표 6의2] 분양전환공공 임대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’ 신설에 따라 지침이 보완적으로 적용됨을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규정 명확화에 따른 청약 신청자 및 사업주체의 혼란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2.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(안 제4조, 별표 1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마련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, 이에 따른 배점 변경 사항 반영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‘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’(’23.8.29.)

3. 가점제 동점자 발생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(안 제6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재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, 일반공급 가점제와 같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나, 입주자저축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입주자저축 기능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4. 부부 개별신청 허용에 따른 규칙의 접수증 발급의무 반영(안 제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사업주체가 규칙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,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에 대해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할 근거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‘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’(’23.8.29.)

5. 휴직자등 소득산정 방식 구체화(안 제10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소득없는 휴직 등의 경우의 소득산정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소득없이 휴직한 자 등의 경우 동일직장·동일직급·동일호봉인 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인의 서류로 소득산정하도록 적용대상을 지침에 명확히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소득없는 휴직 등의 경우의 소득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